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11-28

대 법 원

제 3 부

판결경정결정

사 건	2019다283725 손해배상(지) 2019다283732(병합) 손해배상(지) 2019다283749(병합) 손해배상(지)
원고, 상고인	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.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 담당변호사 심상범, 양호길
피고, 피상고인	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, 이형하
원 심 판 결	서울고등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9나2016954, 2019나2016961(병합), 2019나2016978(병합) 판결

주 문

이 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22. 11. 17. 선고한 판결의 형식적 기재사항 중 원심판결란 다음에 '판결선고 2022. 11. 17.'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.

이 유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11-28

위 판결에 명백한 일부 누락이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2. 11. 21.

재판장	대법관	노정희
주심	대법관	안철상
	대법관	이흥구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11-28

별지

원고 명단

1. B(예명: C)
 2. D
 3. E(예명: F)
 4. G
 5. H(예명: I)
 6. J(예명: K)
 7. L(예명: M)
 8. N(예명: O)
 9. P(예명: Q)
 10. R(예명: S)
 11. T(예명: U)
 12. V(예명: W)
 13. X
 14. Y
 15. Z
- 끝.